

인천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가단2130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경

피 고 1. A

2. B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운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우진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0,737,59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737,5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2. 2.경 D의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은 2002. 2. 8.경 위 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위 공사는 2005. 4. 21.경 D이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D의 E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나. 위 공사는 2018. 8. 30. 원고에게 위 공사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한 후 같은 날 D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2018. 6. 30. 기준 원리금은 60,677,537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6. 3. 기준 원리금은 70,737,597원(= 원금 22,292,422원 + 이자 48,445,175원)이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734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무렵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3. 19. 확정되었다. 원고는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전50101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9. 12. 17.

‘22,784,272원 및 그중 22,292,422원에 대하여 2005. 4. 21.부터 2010. 3. 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0. 4. 9. 확정되었다.

다. F은 2018.경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 당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지분 기재 부분 제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들과 D이 있었다. 피고들과 D은 2018. 6. 7.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하여 D은

상속을 받지 않고 피고들은 2018. 9.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각 1/3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0.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G조합로 하는, 2015. 11. 9.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G조합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22. 3. 2. 각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22. 6. 30. 채권최고액 70,800,000원, 채무자 피고들, 근저당권자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D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들과 D 사이에 이 사건 협의를 70,737,59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채권은 소멸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D은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D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것으로 과소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협의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상속액은

56,849,547원 또는 17,724,477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피고들은, D이 2002. 2. 8. E은행으로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대출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2005. 4. 21. 기산점으로 보아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한 2005. 4. 21.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D으로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10. 3. 19.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 원고는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17.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이 2020. 4. 9.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0. 3.경 무렵 및 2019. 12.경 무렵 중단되었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20. 4. 9. 이후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제기가 있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협의가 있기 전에 발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사단법인 I,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유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D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거나 이를 심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협의는 D이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들은 망인의 소극재산 177,102,089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협의가 구체적인 상속분에 미달하는 것으로 과소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404,500,280원으로 위 소극재산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협의가 과소하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의 M조합에 대한 회신결과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위 채무만 존재한다거나 D의 상속액이 56,849,547원 또는 17,724,477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축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G조합 명의의 2011. 10. 20.자 채권최고액 52,000,000원 및 2015. 11. 9.자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협의 이후인 2022. 3. 2. 각 말소된 사실, 위 각 말소된 2011. 10. 20.자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37,000,000원, 2015. 11. 9.자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3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9. 6.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07,768,22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D의 상속지분이 1/4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은 132,192,055원[=(부동산 가액 607,768,220원 -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총 67,000,000원) × 상속지분 1/4]이다. 결국 이 사건 협의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위 공동담보가액 중 더 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70,737,597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관리처분계획 당시인 2021. 9. 15.경 295,832,670원으로 평가되었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1.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248,000,000원이었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248,000,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개별주택가격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감정인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70,752,0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70,752,0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

별지